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66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정일영·조 국·한준호

박홍근 • 오세희 • 이기헌

송기헌 · 허종식 · 민형배

박희승 • 한민수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,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(2022년 기준 926만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.5%를 차지)에 따른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등을 경로당에 활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3.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4條(地域奉仕指導員 위촉 및	第24條(地域奉仕指導員 위촉 및
업무) ① (생 략)	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	②
奉仕指導員의 업무는 다음 各	
號와 같다.	,
1. ~ 4의2. (생 략)	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4의3.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
	도 업무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	제1항에 따라 위촉한 지역봉사
	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
	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
	지급할 수 있다.